

	회 장
상근부회장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5. 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5. 20(월) 11:00 ~ 11:5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18명 참석(감자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0명) : 이동한, 송옥희, 고치환, 부형중, 강규진, 김순효, 양광호, 김호성, 고두승,
임태봉

나. 위임(8명) : 김성숙, 황의식, 김군택, 김재익, 고은택, 강동화, 최영열, 김금자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다.
오늘 회의는 예산의 추가경정사항에 대한 심의와 함께 현재 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계약기간이 7월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함이라고 하다. 그리고 올해로 5대 임원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회장 등의 선출과
관련한 현재의 규정 중 일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사회를 소집
하게 되었다고 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지시하다.
- 양광호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
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중사자 사례관리교육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2년도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특별회계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아동·청소년 Night Care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 개정안, 제7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운영 승인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7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안건 중 예산·결산과 관련한 심의 안건인 제1호~제5호 의안과 규정개정 및 복지관 수탁과 관련한 제6호, 제7호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5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과 복지관 권미애 부장, 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권미애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2호 ~ 제4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이승희 원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5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협의회와 아리종합사회복지관이 회의자료 31쪽과 77쪽에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표가 뒷장에 표기되어 있음으로 제목을 회계별 예산 총괄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다.

- 김성건 부장 : 다음 회의자료부터는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토록 하겠다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사전에 회의자료가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며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통과를 요청하다.

- 의 장 : 부형중 이사의 원안 통과 의견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동의를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총사자 사례관리교육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2년도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 특별회계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아동·청소년 Night Care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6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부형중 이사 : 선거인의 정의에서 연회비 납부 기준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기존 규정에는 기준시점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규정 예시를 준용하여 선거일공고일 현재 회원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개정한다고 설명하다.
- 부형중 이사 : 다른 단체들의 사례를 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 혹은 6개월 전 등으로 선거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선거일공고일 시점에 가서 회비를 납부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 고치환 부회장 : 부형중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선거인의 기준을 선거일공고일 6개월 전 회원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 양광호 이사 : 예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이러한 사안으로 잡음이 있었다고 하며 기준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고치환 부회장의 의견인 6개월 전은 다음달이 기준일이 되어 시기가 빨리 도래하는 것 같으며 3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다.
- 김태성 감사 :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선거일공고일 이전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관촬을 것 같다고 하다.
- 의 장 :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선거일공고일 이전 2개월과 3개월 중 어떤 안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묻다.

- 부형종 이사 : 6개월은 너무 길고 2개월은 너무 짧다고들 하니 3개월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고두승 이사 : 피선거권(회장선거 임후보)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회장 임후보 자격은 선거인 자격과 동일하게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 고두승 이사 : 이 규정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가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회원이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회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다. 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다.
- 의 장 : 고두승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개정할 경우 현재 회장이 의도를 가지고 개정한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차기 6대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번에 현직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항까지 개정을 하게 되면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차기 6대 임원들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번과 같이 규정의 많은 조문들이 개정되면 회원들에게 개정된 규정 전문을 공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내용은 없다고 답변하다.
- 양광호 이사 :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 선거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다.
- 고두승 이사 : 양광호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선거운동 과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준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규정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규정 예시에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저희 협의회에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개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다.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규정 예시를 낭독하도록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규정 예시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낭독하다.

- 양광호 이사 : 낭독한 선거 규정 중 선거운동 관련 내용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김태성 감사 : 현재 선거관련 규정에 선거방법 혹은 기타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민간단체들처럼 회장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러한 선거관련 규정들로 인하여 선거가 과열되고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김태성 감사의 의견도 맞지만 현재 선거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다.
- 고두승 이사 : 피선거권(회장출마) 자격과 관련하여 현재 회장 임기 중에 논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차기 정기총회에 이번 이사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다.
- 양광호 이사 : 오늘 이사회에서 선거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번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하다.

- 고두승 이사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며 6월초에 이사회를 개최하자고 하다. 사무처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규정 개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사들에게 알리고 이사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6월 초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련 규정을 다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처에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임시이사회 의 일정을 수립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하다.
- 김수완 상근부회장 : 차기 이사회 개최 이전에 선거관련 규정 내용을 정리하여 이 사님들에게 검토를 받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다.
- 고치환 부회장 :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 의 장 : 개정되는 주된 내용은 복지관장 임명을 이사회 의결로 하는 것과 복지관장의 재계약 여부를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과 아라어린이집 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양광호 이사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며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 개정안 중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과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문서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통과하고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다.

- 의 장 :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과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문서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 양광호 이사의 제안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부형종 이사 :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6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 개정안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과 예산회계규정 일부개정안, 문서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고,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선언하다.

바.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7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운영 승인안을 상정하다.

사.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7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최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변에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법인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지난 총회에서와 같이 타 복지관장들이 협의회에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다. 현재 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별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참석 이사들의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부형종 이사 : 협의회에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을 포기한다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 김태성 감사 : YMCA도 전국적으로 많은 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서 현재 협의회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단체들이 복지관 위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일부 종교법인과 학교법인들이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 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종교계 안에서의 분쟁과 타 기관들과의 과열 경쟁 등으로 지역사회 분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협의회에서 재수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다.
- 김태성 감사 : 일부에서 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론들이 있지만 매년 감사를 진행하면서 협의회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에서의 복지관 역할 모델을 창출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모범적인 복지관 운영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다.

- 의 장 : 부형종 이사와 김태성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관 수탁과 관련한 제주지역사회의 분쟁을 방지하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의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수탁기간 중 법인재정부담금을 수탁심사가 있는 해는 1천만원으로, 그 외 기간은 2천만원으로 하여 수탁기간이 3년일 경우 6천만원, 5년일 경우 1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제7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운영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8. 공지사항

- 의 장 : 송옥희 부회장이 서귀포시 표선면에 5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니 여러 이사님들께서 함께 축하해 달라고 하고, 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다. 또한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연봉 부회장이 제12대 스카우트연맹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며 여러 이사님들께서 함께 축하해 달라고 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부형중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1:50)

2013년 5월 20일

회 장 : 이 동



이 사 : 고 치 환



송 옥



강 규 진



고 두



김 순



김 호



부 형 중



양 광



임 태



확인자 : 김 수



기 록 : 김 성

